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집필진

- 강정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김영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세원)
- 김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정우)
-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 김희진 변호사 (국제아동인권센터)
- 신수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다함)
- 유재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 이현주 변호사 (법무법인 시선)
- 이혜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담)

발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프로보노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프로보노 포럼,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지원, 봉사활동 수행,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및 각 분야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아동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인격체로 모든 권리를 차등 없이 누릴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성인과는 ‘다른’ 경험, 환경, 성향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지금 현실에서 아동을 위해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1차적인 지원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적절한 법률지원의 제공이라고 판단하여, 2017년 4월부터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그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삶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보호 및 치료와 관련한 다양한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팀은 아동학대 사건의 일선에서 실무를 진행해왔던 9인의 변호사가 주축이 되었으며, 수 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 본 매뉴얼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피해아동의 치료 및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까지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 공익단체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의 제작을 위해 지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해 주신 TF팀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본 매뉴얼을 통하여 피해

아동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많은 회원 및 관련 단체 활동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공익활동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이찬희**

CONTENTS

제1장 아동과 아동학대의 이해	1
1. 아동의 정의	3
2. 아동의 권리	5
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5
나. 아동인권의 중요성	5
3.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7
가. 아동학대의 정의	7
나. 아동학대의 유형	10
다. 보호자의 범위	18
라. 소결	20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21
1.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23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23
나. 진술조력인	27
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31
라. 증거보전의 특례	34
마. 증인지원제도	35
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국선보조인	37
사. 보론 : 형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절차상 지원방안	37
2. 행정절차상 지원방법	39
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아동복지법 제22조의2)	39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아동복지법 제29조)	40
다. 주소지 외의 지역 취학지원(비밀전학)	41

라. 성폭력의 경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료비 지원 등) -----	42
마. 가정폭력의 경우 : 한부모가정 주택지원제도(임대주택) -----	43
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스마일센터 등 -----	44
3. Q&A -----	45

제3장 수사단계 ----- 47

1. 수사절차 개관 -----	49
가. 사건의 개시 -----	49
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출동 -----	49
다. 피해아동 진술 -----	50
라.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	50
마. 검찰 송치 -----	50
바. 형사법원 내지 가정법원 송치 -----	51
2. CCTV 등 증거확보의 문제 -----	51
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	51
나.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	52
3.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의 지정 및 권한 -----	59
가.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59
나.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권한 -----	59
4. 사건의 인지 -----	60
가. 아동학대 신고 -----	60
나.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을 때의 조치 -----	62
5.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63
가. 응급조치 -----	63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65
6. 경찰단계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73
가. 긴급임시조치 -----	73

나. 임시조치	74
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복	76
7. 검사의 조치	77
가. 결정전 조사	77
나.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77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78
8. Q&A	78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83**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85
2. 아동보호재판	86
가. 사건 접수 및 관할	86
나. 공소시효의 정지	86
다. 임시조치	86
라. 심리	87
마. 처분의 결정	88
바. 불복절차	89
3. 형사재판	89
가. 공소 제기 및 공판절차의 진행	89
나. 영상녹화 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유의점	89
4. 아동학대범죄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제도	91
가. 심리의 비공개	91
나. 신뢰관계인 동석	91
다. 피해아동의 변호사 선임	91
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 변호사의 역할	92
가. 재판절차 참여	92
나. 의견진술	92

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등에 관한 이의신청	92
라. 기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93
마.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94
6. Q&A	95

제5장 아동학대 유관기관 103

1. 아동보호전문기관	105
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105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06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107
2. 학대피해아동쉼터	110
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110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특성 및 기능	111
3. 해바라기센터	112
가. 사업 목적 및 법적 근거	112
나. 설치·운영 현황	113
다. 지원 대상	115
4. 여성긴급전화 1366	115
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115
나. 아동학대관련 업무	116
5.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7
가. 성폭력상담소	117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8
6.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9
가. 가정폭력상담소	119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20
7. Q&A	121

제6장 특수한 경우의 아동 ----- 123

1. 이주배경 아동 -----	125
가.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 및 현황 -----	125
나.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어려움 -----	126
다.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	128
라. Q&A -----	130
2. 장애아동 -----	131
가.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131
나.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	133
다. 각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	135
라. 장애인 수사 및 재판과정 절차 지원제도 -----	139
3. 입양 -----	142
가. 입양의 종류 -----	142
나. 입양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	143
다.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 법적 조치 -----	144
4. 출생신고 -----	145
가. 출생신고 될 권리 -----	145
나. 출생신고 될 권리와 아동학대 -----	147
다. Q&A -----	148

제1장

아동과 아동학대의 이해

》 제1장

아동과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의 정의

‘아동’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를 것이다. 영유아기 어린 아이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달리 구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이 말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 아동권에 대한 기본적 국제규범으로 존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도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는 아동임을 제1조에서 명시한다.¹⁾ 즉, 아동이란 태어난 직후의 신생아, 영유아, 청소년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이러한 아동기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하다.

1)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표 1〉 아동에 대한 법률상의 다양한 용어 및 내용

용어	법률	내용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유아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소년	「소년법」 제2조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위와 같은 용어의 다양성은 긴 성장과정에서 일정 시기마다 달리 발현되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에 따라 법·제도상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고려하여 분류된 것이며, 성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아동기의 특성이 반영된 용어들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연령과 같은 상황에 있는 아동인 경우에도 타고난 기질적 성향 및 성(性),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 문화, 자연환경 등에 따라 필요한 권리 옹호 방안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단어 자체로 대상이 한정될 수 있는 용어보다는 포괄적 의미로서 ‘아동’이라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아동의 권리

가.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동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인간이다. 시민적·정치적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 권리를 차등 없이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주체자(Rights Holder)이다.

그러나 아동은 전통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로서 ‘보호의 대상/객체’로만 인식되었다. 성인으로 구성된 주류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 근대에 이르러 아동과 아동기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세계인권선언(1948)과 아동권리선언(1959)이 나오면서 아동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관점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으며, 협약은 독립된 주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아동을 확인하고 자유권, 사회권을 망라하는 모든 권리의 주체자임을 명시한 최초의 국제법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017.9. 현재 196개의 최다국가가 비준한 UN인권조약으로서, 아동권리의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도 1991년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협약은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법판단에 적용될 수 있다.

나. 아동인권의 중요성

성인이 ‘보호’와 ‘훈육’을 명목으로 아동에게 너무도 쉽게 절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은 성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특성상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할 인간의 범주 속에서 쉽사리 배제되고 간과되어 왔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자기결정능력과 행위능력도 미약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렇게 취급해왔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과 다른 지식적 배경과 경험, 성장환경, 개별적 성향을 지닌 고유한 인간이지, 성인보다 부족한 인간이 아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강조되어 온 ‘아동의 권리’는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나에게 필요한 최선의 선택은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아동 스스로의 권리 향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고려가 중요한 이유이다.

아동기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사고의 폭을 넓혀나가는 준비기간으로서, 아동 개인은 가정, 학교, 사회로 확장되는 삶의 경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그러한 ‘사회화’ 속에 자율성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아동은 스스로의 권리를 존중받고 자율성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지역사회, 국가는 아동의 권리 향유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아동 권리의 존중은 곧 인권친화적인 사회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권리를 알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의 순환을 끊기 위한 첫 단추이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치유하는 것은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고리를 끊는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동권리의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아동 고유의 생명권과 생존 및 발달할 권리,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권리, 아동 최상의 이익이 고려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3 아동학대의 의미와 유형

가. 아동학대의 정의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내법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의규정을 찾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²⁾」(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아동학대를 금지한다.

2) 「아동학대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국제사회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학대 및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 계획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포함하는 아동에 대한 폭력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범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확인하였다. 이에 아동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아동폭력 보고서」(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가 작성되었다. 국제사회는 위 보고서를 통해 가정, 학교 및 교육현장, 사법제도, 노동환경, 지역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 이러한 폭력이 전통과 관습 또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채택된 일반논평³⁾ 제8호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CRC/C/GC/8)」⁴⁾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예로서 제시한다. 2002년 「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 보고」에서도 아동폭력을 ‘아동에게 위협하거나 실제로 가해지는 의도적인 물리적 힘 또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되며 그 결과로 인해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또는 존엄성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해를 끼치는 것⁵⁾’으로 정의한 바 있다.

3) 일반논평(General Comment)는 유엔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약기구(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가 해당 조약 내용 및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특별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포괄적 해석지침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유권해석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의 이해와 실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4) General Comment No. 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article 19, 28(2) and 37, *inter alia*)

5) E. G. Krug et al. (eds.),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2), p.5.

나. 아동학대의 유형

이러한 아동학대는 국내규정상 구체적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⁶⁾ 이하에서 각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1) 신체학대 (Physical Abuse)

(가) 정의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는 ①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②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③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④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⁷⁾.

6) 보건복지부,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 제196쪽~제197쪽.

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아동의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력은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체벌의 물리적 강도가 아동을 기준으로 하여 과도할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판례 상 ①아동의 만 4세 아동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⁸⁾, ②생후 약 8개월의 아동이 탑승한 유모차를 앞 뒤로 강하게 약 23회 흔드는 행위⁹⁾, ③훈육과정에서 필요한 징계라는 이유로 회초리로 10세 아동의 머리, 팔, 허벅지, 엉덩이, 어깨 등 신체를 세계 때려 멍이 들게 한 행위¹⁰⁾, ④훈육을 이유로 아이를 난타하는 행위¹¹⁾ 등이 이에 해당한다.

- 8)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재연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 1은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체벌로 인하여 입술이 부어 오르거나 귀에 피가 맺히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춘천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 9) 피고인은 약 1분 동안 약 23회에 걸쳐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었다. 이 사건 유모차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유모차를 앞뒤로 강하게 흔들 경우 피해자로서는 몸이 들썩이면서 유모차의 등받이 부분과 충돌하여 머리, 목, 등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된다.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드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앞으로 강하게 내뻗으며 유모차를 흔드는 모습과 그로 인하여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심하게 들썩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연령(생후 약 8개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방식,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음이 명백하다(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합664 판결).
- 10) 피고인(피해아동 친부와 사실혼관계)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라는 숙제와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기만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친부 c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일을 치고 귀가를 하고, 낮 시간에 피고인의 딸이 집에 있다고는 하나 밤에 일을 하는 탓에 낮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고 있어, 14:00경에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는 돌봐 줄 사람이 없이 거의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육 실정임에도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가 혼자 알아서 숙제와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벌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단400 판결)
- 11) 피해자는 2007. 5. 17. 13:46경 사망 당시 전두부(이마), 두정부(이마 끝에서 머리의 꼭대기까지), 양쪽 측두부(귓바퀴의 위쪽) 두피에 다발성 좌상이 있었고, 오른쪽 귓바퀴 상부에 표피박탈이 있었으며, 그 외에 양쪽 눈 부위, 코 부위의 피하출혈 및 찰과상, 우측 감각근부, 좌측 손등 및 배 우측 부분에 멍 자국이 발견되었다. 위 상처 중 전두부의 오른쪽, 두정부, 측두부 두피하출혈은 사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두정부의 왼쪽, 전두부, 측두부 두피하 출혈은 사망일로부터 3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등의 멍은 3일에서 7일 정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얼굴 왼쪽의 눈 주변과 코 왼쪽에 있는 표피박탈은 압박성(한번의 충격)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증거기록 1069). 위 두피하출혈은 주먹으로 맞거나, 넘어져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생기는 것이고, 손등의 멍은 이른바 '방어손상'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주로 날아오는 주먹을 막을 경우에 나타난다. 윗입술주름띠 파열은 또한 주로 얼굴을 주먹이나 손으로 때릴 때 생기는 손상이고,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징표로 알려져 있다(대구고등법원 2008. 3. 27. 선고 2007노527 판결).

(2)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가) 정의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¹²⁾.

정서학대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¹³⁾.

(나) 구체적인 예

정서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①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②잠을 재우지 않는 것, ③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④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⑤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⑥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⑦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⑧아동

12) 헌법재판소 2015. 10. 21. 결정 2014헌바266

1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⑨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¹⁴⁾.

판례상 ①보육교사가 3세 아동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보게 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¹⁵⁾, ②보육교사가 체벌을 이유로 3세 아동을 다른 원생과 떨어져 앉게 하여 소외감을 주는 행위, 식사를 하게하고,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수저통을 던져 복도에서 쭈그리고 앉아 밥을 먹게 하는 행위,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¹⁶⁾, ③학교 교사가 경미한 문제행동임에도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여 실제로 왕따를 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¹⁷⁾ 등 역시 아동에 대

1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 15)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원아인 甲(3세)에게 휴대전화로 무서운 영상을 틀어 주어 이를 시청한 甲이 다리가 떨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울게 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당시 甲의 반응과 행동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그 전에도 최소한 한 차례 이상 甲이 두려워하는 영상을 보여 주어 위협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쉽게 공포심을 느끼는 소양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포심을 야기하는 영상을 강제로 보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甲은 어머니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그로 인해 심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춘천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 16) 피고인 2는 반 교실에서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피고인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피고인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위 ○○어린이집△△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피해자를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괄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 17)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항, D초등학교 학교규칙 제23조, D초등학교 학교선도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과제를 해오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훈육·훈계(경고)의 방법(구두주의, 서면경고, 격리조치, 간접적 체벌,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과, 징계유예 및 방과후 봉사명령제 등)으로 지도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들이 처음 학교생활을 ○○초등학교 1학년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동들로 구두지도나 부모에게 아동들이 과제를 성실하게 하도록 가정지도를 부탁하는 방법 등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경미한 행동들인 점, ②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이 단순히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특정 학생을 왕따로 지목하고 다른 학생이 왕따로 지목된 학생과 대화를 하는 경우 그 학생 역시 왕따로 지목하여 똑같은 벌칙을 받게 됨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스스

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예라고 할 것이다.

(3) 성학대 (Sexual Abuse)

(가) 정의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¹⁸⁾.

설령 피해아동이 자발적으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자의 행위요구에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아동이 정서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¹⁹⁾.

로 피고인이 왕따로 지목한 학생을 왕따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왕따 행위를 정당화시키거나 왕따를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방법인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한 “1일 왕따”는 왕따로 지목된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왕따”는 따돌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왕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2012.3.21. 개정시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제주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고단887 판결).

18)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19)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

(나) 구체적인 예

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구체적인 예로는 ①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②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③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④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⑤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있다²⁰⁾.

판례를 통하여 보건대, ①지적장애가 있는 16세 아동에게 가슴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²¹⁾, ②식당 안 놀이터에서 다른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 5세의 아동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 역시 아동에 대한 성학대에 해당한다²²⁾.

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2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21)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16세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과 동영상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14.1.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에서 정한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4677 판결)

22) 피해 아동(5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식당 안 놀이터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한 후, 피해 아동을 엮드리게 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아동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희롱 내지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과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울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2925 판결)

(4)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가) 방임

① 정의

아동학대에서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 상 ‘방임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임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물리적 방임이란 ①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②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③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²³⁾, ④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을 의미한다²⁴⁾.

한편 교육적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²⁵⁾²⁶⁾. 구체적인 사례로는 어린

23) 피고인은 피해자 서○○(여, 3세)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를 출산하였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인천 연수구 함박로 67번길 8-4, 103호에 거주하다가 피해자를 유기한 채 가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방임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 6. 9. 2015고단6533 판결).

24)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25)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이집 원장이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로 법원이 판단한 예가 있다²⁷⁾.

그리고 의료적 방임이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²⁸⁾. 예를 들어 아동에게 다발성 골절 등으로 혈중으로 귀의 변형이 오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방치하는 행위 역시 또 다른 방임에 의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²⁹⁾.

(나) 유기

① 정의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방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② 구체적인 예

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①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②아동을 병원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2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27) 피고인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원장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0.11.30.경부터 같은 해 12.7.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위 이 가 별지 범죄일람표 1,2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1고단148 판결).

2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29)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제2항,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코뼈 등 다발성 골절상으로 코와 다리가 붓고, 혈중으로 왼쪽 귀가 변형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피해자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고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연고를 발라주는 이외의 어떠한 치료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965 판결)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③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등이며, 보호자가 1세의 아동을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집에서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유기하고 도망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³⁰⁾.

다. 보호자의 범위

(1) 일반적인 보호자의 범위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즉, 이때의 “보호자”는 아동의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친인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및 학원 강사, 아동의 통학로 차량기사도 포함될 수 있다.

(2) 교육에 있어서의 보호자의 범위

부모는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며(협약 제18조 제1항), 학교교사 및 학원 강사는 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어 아동(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통학로 차량기사 역시 아동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어,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되는 보호자라 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부모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범죄를 행한 경우 외에는 “아동

30)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김○○(여, 1세)의 친모이고, 남편 B와 별거하여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7. 09:14경 경남 ○○시 ○○읍 ○○리 소재 ○○부동산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약200m 떨어진 노상에 내버려둔 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4028 판결).

복지법」 위반의 점”만 적용될 뿐, 「아동학대처벌법」은 잘 적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동법 제7조),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는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학교를 포함하는 아동관련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결과, 교사와 학생 간에 사소한 갈등만 생겨도 학부모들의 일방적·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고소·고발·진정으로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취업제한 규정은 위헌소지가 높음을 주장하기도 한다.³¹⁾³²⁾

(3) 보호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한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³³⁾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1) 한국교육신문 2017. 1. 16.자 기사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79620>

3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운영자나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이런 기관을 믿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여 죄질이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성범죄전력자에게 가혹한 제한이 될 수 있고, 범죄의 경중과 재범의 위험성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 사회가 청구인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33) 법제처 제·개정이유

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아동보호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소결

2017.3.27.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위해 파악한 2016년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절대적인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정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특히 중복학대가 48%에 이르렀고, 개별학대 유형으로 신체학대 14.6%, 정서학대 19.1%, 성학대 2.6%, 방임·유기 15.7%의 발생하였다.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학대도 발단이 되어서는 안 될, 폭력의 연쇄 고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개념이해를 전제로, 이하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아동학대 대응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1 ▶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1) 피해아동 국선변호인 제도의 근거법령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제도는 본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서 처음 시행한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서 비롯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서 조력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적인 자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행위자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의 법률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다.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하여는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바에 따르고 있는데,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와 피해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 규칙 제11조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또한 피해아동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칙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국선변호사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8조제2항).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 ①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가 한다.
 -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 2.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피해자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6조 또는 그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 절차는 이하와 같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변호사선임여부의 확인 및 고지절차(규칙 제9조)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고지)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선정신청의 세부절차(규칙 제10조)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국선변호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선정신청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의 권한 범위

이렇게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변호사로서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호사 제도와 상당부분 동일하나, 아동학대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변호사의 권한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정한 피해자 변호사의 기본적인 권한〉

1. 조사참여 및 의견진술(제27조)
2.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제27조)
3. 증거보전 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열람·등사(제27조)
4. 소속 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열람·등사(제27조)
5. 형사절차의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제27조)
6. 수사과정 또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의사소통 중개·보조 신청권(제36조 및 제37조)

〈아동학대처벌법에 정한 피해자 변호사의 추가적인 권한〉

1. 긴급임시조치(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 신청(제13조)
2. 임시조치(제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의 청구 및 의견진술(제14조)
* 임시조치 후 법원은 변호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제19조제7항)
3.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제22조)
4. (임시로) 후견인의 임수를 수행할 사람 선임 시 의견 진술(제23조)
* 선임조치 후 법원은 변호사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제23조제3항)
5. 관할 이송 시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수수(제32조제2항)
6.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시 통지를 수수(제36조제5항), 보호처분 변경시 동일함(제40조제3항)
7.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취소 등 청구(제41조)
8.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종료 청구(제42조)
9. 학대행위자에 대한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제45조)
10.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의견진술(제47조)
1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와 변경 신청(제50조)
12.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연장 청구(제51조)
13.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취소·변경 등에 대한 항고·재항고(제57조)

(4)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국선) 변호인

또 특이사항으로서,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사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에 따라 사선 또는 국선변호사가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의 허가없이도 보조인으로 활동하여 피해아동을 위해 진술을 보조하거나 활동을 조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권한 외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의 보조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한편 피해아동에게만이 아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조치사건, 보호처분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① 임시조치의 고지 수수 ② 임시조치의 변경 신청 ③ 행위자 보호처분의 변경 통지 수수 ④ 관련 항고·재항고 신청 등의 권한이 있다. 이처럼 변호사로서 (국선 또는 사선)보조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경우 비밀엄수의무를 지게 되고 그 위반시 형법 제317조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따라 처벌된다.

나. 진술조력인

(1) 진술조력인의 정의

피해아동의 진술조력인 제도는 아동이므로 나이가 어리거나 의사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력·보완하는 것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서 피해아동은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되어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점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준용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 역할은 크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력인, 공판절차의 진술조력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진술조력인 선정사유

진술조력인 선정사유는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인데, 장애로 인한 경우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
 - * 신체적 장애 : 언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경우
 - * 정신적 장애 : 정신박약 또는 정신지체, 지적발달장애, 자폐증 등이 있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아동

(3)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력인의 업무범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력인의 경우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또는 검증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한다.

(나) 중개 또는 보조의 내용(규칙 제18조제1항)

- ①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질문의 취지를 피해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질문을 변환하여 전달하는 활동
- ②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출의견의 내용을 설명하는 활동

-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출의견의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조사 계획 및 보조수단 등을 논의하거나 조언하는 활동
- ④ 피해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조성하는 활동
- ⑤ 그 밖에 수사기관이 피해아동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다) 진술조력인의 면담과 의견 제출

① 조사 전 면담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검증 전에 피해아동을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조사후 의견제출

조사 또는 검증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아동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진술조력인이 제출하는 의견에는 피해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또는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출의견 내용

(피해아동에 관한) 인지기능, 진술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이해, 표현 능력, 정서, 성격, 심리상태, 그밖에 의사소통의 증개 또는 보조에 필요한 정보 등

(4)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의 업무범위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술조력인은 공판에 있어 피해아동의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한다.

(나) 중개 또는 보조의 내용(규칙 제18조제1항)

① 협의

법원은 진술조력인과 (i) 증인이 이해할 수 있는 증인신문의 방식, (ii) 증인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법원에 알리는 방식 등을 협의한다.

② 질문요지 설명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에게 질문의 요지를 설명한다(이 때 진술조력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 취지를 질문하거나 신문사항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③ 진술방식 변경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증인의 진술을 조력인이 소송관계인의 편의에 맞게 진술할 수 있다.

④ 진술 등의 취지 변경 금지 의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의사표현을 중개·보조하는 경우 신문이나 진술의 취지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⑤ 재판장의 질문

재판장(합의부원 포함)은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검사, 피고인 등의 질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진술조력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다) 기일통지 등

법원은 진술조력인이 선정된 경우 진술조력인에게 중개·보조할 기일을 통지하며, 진술조력인은 증인의 좌석 가까운 곳에 위치함

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1)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의의

피해아동을 위한 형사절차상 지원제도로서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있는데, 이는 피해아동이 직접 법정에서 피고인 등을 대면하고 진술하지 않도록 하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에서 편안히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근거법령

우선적으로 형소법에 따르는 경우로서, 이 규정은 증인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평온을 잃거나 진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아동학대범죄 외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중계장치를 이용한 증인신문의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는 경우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가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40조 등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6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여부의 결정 및 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등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부터 제84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정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때에는 진술조력인을 증언실에 동석하게 하는 의무조항을 특별히 두고 있다.

(3) 증인신문의 내용 및 절차

위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의 결정(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4³⁴⁾)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신문 전에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피고인이 출석하는 법정에서 피해아동을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 중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재판부에 차폐시설 또는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중계방법 등의 절차(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5³⁵⁾)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인은 재판부에 법정 외의 별도의 장소(법원 외

34) 제84조의4(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신문 여부의 결정)

① 법원은 신문할 증인이 법 제165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으로 신문하는 결정을 할 때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신문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증인의 연령, 증언할 당시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증인신문 전 또는 증인신문 중에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5) 제84조의5(중계방법 및 증언실의 위치)

① 법원은 제84조의4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을 법정 외의 장소로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하게 하고, 영상과 음향의 송수신에 의하여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증언실의 증인이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다만, 중계장치를 통하여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대면하는 것이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증인 또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영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의 장소도 가능)에 중계장치를 설치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 심리의 비공개 관련(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³⁶⁾)

피해아동이 증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라) 증인을 위한 배려(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7³⁷⁾ 및 제84조의8³⁸⁾)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증언할 때 동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이 불안하지 않도록 증인이 사용하는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원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증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

라. 증거보전의 특례

증거보전제도는 증거의 산일(散逸)에 따른 증명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공판 절차 전)에 미리 검사가 증거를 보전하는 제도로서, 쉽게 말해 미리 압수·수색·검증·감

36) 제84조의6(심리의 비공개)

-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또는 차폐시설을 통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재판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및 공개, 법정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37) 제84조의7(증인실의 동석 등)

- ①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 제1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제84조의5에 정한 증인실에 동석하게 한다.
- ② 법원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증인실에서 중계장치의 조작과 증인신문 절차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38) 제84조의8(증인을 위한 배려)

- ①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증인은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그 밖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증인은 증언을 하는 동안 담요, 장난감, 인형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정 또는 신문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형소법 제184조).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경우 증거보전에 있어 특례는, 피해아동 등이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그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⁹⁾.

(1) 피해아동 등의 증거보전 청구 요청

피해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아동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⁴⁰⁾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촬영물 또는 그 밖의 증거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의 증거보전청구

피해아동 등이 검사에게 증거보전청구요청을 하게 된 경우,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형소법의 절차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게 된다.

마. 증인지원제도

아동학대처벌법은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의 지원제도 이외에도, 증인지원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증인지원실의 설치·운영은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 등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면서도 이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여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는 것이다.

39) 구별해야 할 것으로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인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형사 사법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40)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해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 피해아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피해아동이 사망, 질병,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자격)

- ①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증인지원관을 둔다.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인품·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배치한다.
- ③ 고등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법원 소속 증인지원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증인지원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① 각급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관장한다.
- ③ 증인지원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의 증인지원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관의 소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업무) ①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초본 교부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3. 증인지원시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증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급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이 증인지원관의 업무로 정한 업무
- ②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한다. <개정 2014.9.1>
- ③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사건의 업무현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적으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우선 증인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아동이 재판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 증인지원관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위 규칙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같다. 증인지원관은 증인이 범죄신고자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관할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법원 내에서의 신변안전조치에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국선보조인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조인제도를 두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이나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돕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꾀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21조).

〈아동복지법〉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사. 보론 : 형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절차상 지원방안

「형법」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고 그 행위자(공범 포함)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사범으로서의 행위 및 행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형법」에서 정한 학대

죄, 유기죄, 폭행·상해죄, 명예훼손·모욕죄, 살인죄 등은 행위자를 그 행위에 따라 처벌하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은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 공판 등의 제반 절차를 다루고 있고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고전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단지 고소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거나⁴¹⁾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여⁴²⁾ 실제

41)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2)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 <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적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양형을 촉구하는 하는 역할을 하였다⁴³⁾. 그러나 피해아동을 위한 특칙이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있지는 아니하다.

2 행정절차상 지원방법

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아동복지법 제22조의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치료나 보호 등의 목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속히 아동학대행위를 대처하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인 아동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2조의2(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3) 형사소송법에서는 (아동을 포함한)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사절차상 보호(배려)를 하고 있다.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아동복지법 제29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그 가족(보호자 포함)에게 교육과 상담 등의 여러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 등이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다. 주소지 외의 지역 취학지원(비밀전학)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등)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비밀전학’ 제도이다. 특히 행위자들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이 없더라도 전학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증자료로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 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①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성폭력의 경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료비 지원 등)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지지체제로서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 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① 법 제1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성폭

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 시·군·구,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성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이란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수사기관에의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사본, 성폭력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이 서명한 사실 확인서 또는 군 피해자의 경우 군에서 제출하는 성폭력 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성폭력방지법〉

제28조(의료비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마. 가정폭력의 경우 : 한부모가정 주택지원제도(임대주택)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와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

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 ①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스마일센터 등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무부가 설립한 범죄피해자 전문심리지원기관으로서, 강력범죄사건으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학적 진단,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재활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범죄발생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거가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일센터는 서울동부, 부산, 인천, 광주 등에 있으며 최근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여 해당 아동에게 맞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 Q&A

Q 피해아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은 없는지?

A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제22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피해에 대한 지원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은 제정되어있지 않다.

한편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다.

Q 심리치료와 신체치료가 함께 가능하고 학대피해아동에 특화된 전문의료기관은 없는지?

A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병원들은 늘고 있는 듯하나, 현재까지 아동학대만을 전문으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해주는 아동학대치료 전문병원에는 없다.

Q 현재 피해아동 보호시설의 현황은 어떤가?

A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현황은 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install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현황은 제5장 아동학대 유관기관에 기술되어 있다.

Q 학대를 당하는지가 불분명한데 어느 경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A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

Q 아동학대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고, 신고해서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A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방문신고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관서에 가능하다(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등을 알려야 한다(단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3장

수사단계

》 제3장

수사단계

1 수사절차 개관

가. 사건의 개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므로(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아동학대는 신고, 인지,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개시된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에 따라 피해아동은 시설로 옮겨지는 등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 피해아동 진술

피해아동은 피해사실을 국선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조력인 참여하에 해바라기센터 등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술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술하게 된다. 향후 수사과정에 대해 통지를 받고자 할 경우 전화, 팩스,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사과정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다.

라.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피해아동의 진술 전이나 진술 후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방식과 같다.

마. 검찰 송치

경찰에서 피해아동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의견(기소 또는 불기소)을 기재하여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하였다는 내용을 진술시 선택(전화, 우편, 이메일)한 방법에 따라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송하여 준다.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한다. 또한 검사는 결정 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 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1항).

바. 형사법원 내지 가정법원 송치

검사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학대에 해당하지만 처벌보다는 행위자의 성행 및 환경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통하여 형사법원에 기소한다.

2 CCTV 등 증거확보의 문제

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⁴⁴⁾

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여⁴⁵⁾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고⁴⁶⁾,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⁴⁷⁾.

-
- 44) 어린이집 CCTV의무설치와 관련하여,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든 점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CCTV를 통하여 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집된다는 점에서 학부모·아동·교사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심리중에 있다.
- 45) 어린이집 외의 유치원, 학원 등의 경우 CCTV 설치의무가 없고 일반적인 열람권한도 없다. 해당 기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에 등장하는 정보주체 전체의 동의를 받아 확인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46) 어린이집 CCTV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어 불필요하게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 47) 다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CCTV가 아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한 경우, 해당 영상을 60일간 보관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 ② (생략)
-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보호자, 관계공무원(보육담당공무원, 수사·재판기관 등),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및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 열람요청의 경우

관계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 열람요청의 경우 해당영상을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파기하였거나, 열람요청이 해당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경우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

람을 거부하기로 한 경우에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 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그들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⁴⁸⁾를 한다는 명목으로 즉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시 영상정보를 열람하려면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하거나, 관계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즉시 열람이 가능한 기관과 동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⁴⁹⁾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48)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9)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⁵⁰⁾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⁵¹⁾>

VI. 열람 및 제공

1. 열람의 요청

-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동행하여 즉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중략)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 함

(생략)

2. 열람

(중략)

-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

50)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님

(생략)

3. 열람의 거부

-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서면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열람 등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략)

4. 관계 공무원 등의 열람⁵²⁾

(중략)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관계 공무원⁵³⁾ 등이 열람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생략)

5.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

- 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따른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
 - 아동보호전문기관 :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어린이집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중략)

-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열람 요청시에는 공문서, 신분증 등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요청 내용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생략)

51)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야 하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이다.

52) 관계 공무원 등과 안전업무 수행 기관의 열람을 따로 항을 나누어 서술 하고 있으므로, 앞의 1~3항의 내용은 보호자의 열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53) 해당 조문을 해석하면, 영유아보육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수사·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해당된다.

(3) CCTV 영상제공 요청의 경우

CCTV 영상의 열람과 달리 영유아보육법령은 CCTV 영상의 제공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CCTV 영상을 제공 받으려면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⁵⁴⁾,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공으로 보아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 영유아보육법령에는 영상자료 제공에 관한 조항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

54) 아동학대 의심영상을 열람한 다음 후속조치를 위하여 해당 영상을 증거로서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집 CCTV 설치의 목적인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에 부합하는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실무에서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사의 지정 및 권한

가.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의 ‘1.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중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부분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아동을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③ 아동학대중상해죄, 상습아동학대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아동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나.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권한

- ① 긴급임시조치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 ② 임시조치청구요청권 및 의견진술권(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③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참여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 ④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참여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7조)

- 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진술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 ⑥ 증거보전청구요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⑦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 출석 및 의견진술권(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 ⑧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 ⑨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권(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취소 및 처분 종류 변경 신청권(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

4 사건의 인지

가. 아동학대 신고

(1) 신고권자

-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
- ②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누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③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⁵⁵⁾

- 55)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

※ 고소 특례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 가능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1항),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2항),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 제3항).

(2) 신고기관

아동학대의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가능하다.

(3) 신고방법

① 112 및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전화를 거는 방법

② 각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 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4) 신고자에 대한 법적보호조치

(가) 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나) 신고자 비공개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제한, 영상물촬영,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소송 진행의 협의,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가 가능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나. 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을 때의 조치

(1) 현장출동의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

(2) 현장출입·조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

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2항).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3항),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입, 조사, 질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4항).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장소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문을 강제로 열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지 않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출동 시에는 반드시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가. 응급조치

(1) 대상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서의 피해아동

(2) 조치권자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전문기관 직원

(3) 조치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전문)

- 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②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의 격리
- ③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후문).

(4) 기간

7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검사가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

(5) 응급조치 후의 처리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2항),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4항), 위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5항).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6항).

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1) 개념

주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아동을 친권자의 보호 아래 그대로 놔두는 것은 학대가 재발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해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하는 제도이다.

(2) 관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1항).

(3) 청구권자

판사의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4) 보호명령의 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 ①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②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③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④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⑤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⑥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⑦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⑧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⑨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2항), 판사가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5) 임시후견인의 선임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이 때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법원이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3항),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4항), 피해아동의 재산을 관리

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해아동을 대리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3항, 제23조 제5항, 민법 제949조).

(6) 보조인의 선임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으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⁵⁶⁾, 판사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피해아동에게 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9조 제2항).

56) 국선변호인이 보조인으로 활동하게 경우에 대해서는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 1. 형사절차상 지원 방법 >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 보조인으로 선임되는 (국선) 변호인 부분 참조

(7)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관할 법원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1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3항)

(8)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9) 임시보호명령

관할 법원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판사가 제4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서에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면 된다.

(10) 이행실태의 조사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3조).

(11) 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4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54조).

(12) 항고와 재항고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

조 제1항).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항고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2항).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접근금지(법 제47조 제1항 제1·2·3호)⁵⁷⁾〉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들이 재학중인 학교 및 입소한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문자메세지, 음성통화 등 포함)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3. 피해아동들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이 재학중인 학교 및 입소한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5.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문자메세지, 음성통화 등 포함)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57) 관할법원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후 결정시까지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이를 함께 청구하도록 한다(법 제52조 제1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보호위탁, 친권정지(법 제47조 제1항 제4·7호)〉

청구취지

1.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한다.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위 기간 동안 피해아동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선임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학대아동쉼터에 보호위탁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간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
 3. 피해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 ■■■시장을 선임한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위탁 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치료위탁(법 제47조 제1항 제5호)〉

청구취지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국립서울병원에 치료위탁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의 재학중인 학교 및 입소한 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3.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한다.
 4. 피해아동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서울가정법원관할 수탁의료기관에 치료위탁(전문의의 진단으로 그 필요성이 확인된 정신과적 약물치료를 포함)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가정위탁 (법 제47조 제1항 제6호)〉

청구취지

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피해아동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문자메세지, 음성통화, 이메일 등 포함)을 이용한 접근의 금지를 명한다.
3. 피해아동을 피해아동보호명령일로부터 1년 간 권△△에게 가정위탁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지 기재례 : 친권자의 의사에 갈음하는 결정 (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청구취지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2017. 6. 28. 국립서울병원에서 시행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처치(전문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응급수술, 입원 약물치료)를 승낙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친권자(피해아동들의 모 강●●(주민등록번호 : 7707**-28***** / 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시 ○○구 ○○동 102번지 / 본 : 晉陽), 피해아동들의 부 이▲▲(주민등록번호 : 7104**-0000000 / 등록기준지 : 서울특별시 △△구 △△동 304번지))의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피해아동들[이■■■(출생연월일 : 2010. 02. 03. / 출생장소 : ◆◆여성병원), 이□□(출생연월일 : 2013. 05. 20. / 출생장소 : ◇여성병원)]의 출생신고에 있어서 필요한 행위를 승낙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취지 기재례 (법 제50조 제2항)〉

변 경 취 지

이 사건에 대하여 2016. 6. 29. 에 한 “피해아동을 2017. 6. 28. 까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한다.”라는 결정을 “피해아동을 2017. 6. 28. 까지 국립서울병원에 치료위탁 한다”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 청구취지 기재례 (법 제51조 제1항)〉

연 장 취 지

피해아동에 대하여 2017. 6. 28. 까지 한 치료위탁을 2017. 9. 28. 까지 연장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6 경찰단계에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가. 긴급임시조치

(1) 대상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2) 조치권자

사법경찰관

(3) 신청권자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 변호사(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4) 조치내용(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③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 긴급임시조치 후의 처리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2항),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3항).

나. 임시조치

(1) 대상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2) 청구권자

검사가 법원에 청구

(3) 신청권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신청

(4) 조치내용

-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

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③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 ⑥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⑦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 처벌법 제14조 제1항).

(5) 임시조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2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제3항).

(6)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와 같은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의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1항).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

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제3항).

다.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불복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1항).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2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3항).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45조 제4항).

7 검사의 조치

가. 결정전 조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1항).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이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3항).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4항).

검사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25조 제5항)

나. 검사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①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②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③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④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 ⑤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게 된다.

처분	처분의 결과
공소제기	형사처벌
아동보호사건송치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아동학대 관련기관에서 상담, 교육(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1) 기소유예처분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제기가 가능하다.

(2) 혐의없음처분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다룰 수 있으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에는 항고에 대해서 각하하는 경우도 있다.

8 Q&A

Q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경찰에서 진술녹화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친권자인 친모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막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A 피해아동이 범죄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권리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의 전제로서 피해아동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선에서는 법정대

리인의 동의가 있고, 또 동석한 경우에 한하여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해아동이 법정대리인 없이 진술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피해아동의 피해진술 의사가 명확하고 법정대리인 동석에 준할 정도의 피해아동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피해아동이 진술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피해아동의 의사능력과 연령⁵⁸⁾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진술할 능력이 있고, 또 피해아동 본인이 진술하기를 원한다면 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약, 친모가 피해아동의 진술을 막는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있어서 강요 또는 정서적 학대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면 경찰을 통하여 임시조치 상의 접근금지나 법원을 통한 피해아동보호명령 상의 접근금지를 받아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Q 피해아동과 상담 중 피해아동이 과거에도 학대행위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병원에 피해아동의 의무기록을 요청하였는데, 병원 측에서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대응 방안은?

A 과거 의료법상 단독으로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해석에 있어, 만 14세 이상의 자이어야만 단독 발급이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하여야만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므로⁵⁹⁾, 14세 미만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단독으로 의무기록 발급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결국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의무기록이 필요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통하여⁶⁰⁾ 이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무기록 발급 관행에 대한 문제제

58) 사실상 만 14세 이상의 피해아동은 단독으로 심리 상담을 받거나,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이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의 반대해석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실제 문제되는 것은 만 14세 미만의 피해아동의 진술에 있어서 친권자가 진술을 반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진술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고, 이후에도 친권자의 협조가 기대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친권을 정지시키고 임시후견인을 선정하여 임시후견인의 권한으로 피해아동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진술을 방해하는 친권자에게 인정되는 아동학대행위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피해아동이 진술할 아동학대범죄의 방조 등으로 구성할 여지가 있다.

59) 만 14세를 기준으로 한 근거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이다.

기가 있어왔고, 이에 2017. 5. 보건복지부는 ‘의사능력’이 있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 하여는 의무기록 단독 발급을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다만, ‘의사능력’ 유무의 해석이 일선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가?

A CCTV 설치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만 부과된 것이고, 「유아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설치한 CCTV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원아들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것 또한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 현재 2016. 7. 28. 2015헌마1059: (중략)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므로 CCTV 설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다.

Q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신고의무 해태 시 처분은?

A 법률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 즉 피해아동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⁶¹⁾. 신고의무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나 각자가 신고의무를 지므로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학대인지사실을 고지한 것만으

60) 영장을 통하여 확보하거나, 법정대리인을 설득하여 임의제출 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사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상 친권자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의무기록 발급의 동의를 얻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61) 아동학대의 의심이 전혀 없음에도 신고하는 경우 무고의 죄책을 짐은 물론이다.

로는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급자를 통하여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나 상급자가 신고를 약속하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상급자에게 고지한 신고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해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학대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 및 학대의 정도나 내용, 학대장소나 시간 학대사실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신고자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신고의무불이행책임을 질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을 지며,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신고의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된다.

Q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가 결정되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게 되었다. 이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위하여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A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사건을 전제로 내려지는 것으로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그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기소 시점부터 피해아동에 접근금지 조치는 없어진 것이므로, 학대행위자가 구속되지 않은 이상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접근금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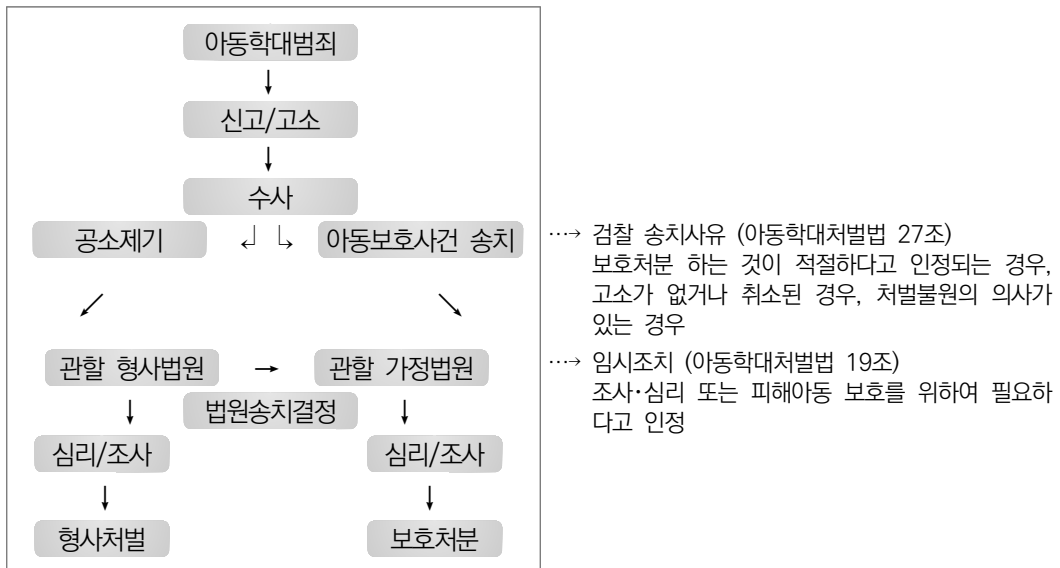
》 제4장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1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검사 또는 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송치에 따라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절차의 개략적인 흐름〉



2 아동보호재판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제27조).

가. 사건 접수 및 관할

아동보호재판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검사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송치에 의하여 접수되고,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

나. 공소시효의 정지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다. 임시조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을 단독 또는 병과 하여 내릴 수 있다.

〈임시조치의 유형 및 내용〉

구분	임시조치의 종류	기간 및 연장	불이행시 제재
제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개월 (2차례 연장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2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개월 (2차례 연장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개월 (2차례 연장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제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제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개월 (1차례 연장가능)	-

라. 심리

아동보호사건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 또는 이송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8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심리기일은 보통 보조인 선임 이후 1회로 종결되고, 종결된 당일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피해아동이 심리기일에 진술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 처분의 결정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유형 및 내용〉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및 시간제한	불이행시 제재
제1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1년 (최대 2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1년 (최대 2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3호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1년 (최대 2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4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200시간 (최대 400시간)	-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1년 (최대 2년)	-
제6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1년 (최대 2년)	-
제7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1년 (최대 2년)	-
제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의 상담위탁	1년 (최대 2년)	-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판결의 사유가 된다.

바. 불복절차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 한하여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다.

3 형사재판

가. 공소 제기 및 공판절차의 진행

검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조진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나. 영상녹화 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관련 유의점

(1) 피해아동의 진술내용 및 조사과정 촬영 및 보존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준용되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2) 예외 및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치 필요성

(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의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일반 형법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의 진술만으로는 영상녹화 된 피해아동의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적용법조의 상이함으로 영상녹화 된 피해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직접 피고인을 대면하면 심리적 부담감과 공포감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신뢰관계인 동석(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비디오 등 증계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피고인의 퇴정(형사소송법 제297조) 등 필요한 조치를 재판장에 신청함으로써 피해아동의 보호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또는 살인죄·살인미수로 기소된 경우

한편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영상 녹화물로 진정 성립을 갈음하는 제도(아동학대처벌법 17조-성폭법 30조 6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아동 진술녹화물이나 진술조서를 부인하면 아동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심각하다. 일단 연락이 안되는 아동이 많고, 그간의 심리치료 등으로 사건 내용을 지우려던 아동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기도 한다. 법정이라는 딱딱한 공간에서 아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횡설수설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디오 증계 장치를 통한 증언방법도 있지만, 법관의 심리 형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져도 화면으로 증언하는 것이라 아동이 그 행위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장난삼

아 증언하는 돌발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될 때의 죄명부터 면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4 아동학대범죄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아동 보호 제도

가. 심리의 비공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1조). 법상 임의적 비공개로 되어있으나, 피해아동이 공개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해아동의 피해사실 또는 신상정보가 노출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나.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신뢰관계인(피해아동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4조).

다. 피해아동의 변호사 선임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가 준용된다. 변호인의 권한에 대하여는 앞서 제2장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 1. 형

사절차상 지원 방법 > 가.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 (3)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인의 권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과 동일하다.

5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피해아동 변호사의 역할

가. 재판절차 참여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아동보호사건의 심리기일 및 일반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절차,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 아동학대행위자(피고인), 행위자의 변호인(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나, 피해아동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나. 의견진술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도모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33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심리기일에, 일반형사사건에서는 공판기일에 피해의 정도 결과, 보호처분 또는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고,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의견진술의 신청을 하여 지정된 의견진술기일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다. 재판장의 소송지휘 등에 관한 이의신청

법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

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심리의 비공개 신청, 피고인의 퇴정, 진술조력인의 참여 및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비디오 등 증계 장치에 의한 신문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절차 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무리한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재판부에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기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피해아동의 변호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아래와 같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피해사실의 요지와 보호명령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유형〉

제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제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제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제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제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제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제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제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의 진행경과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피해아동의 변호사로서는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정보와 진행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2) 친권제한 조치의 촉구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학대범죄로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이는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사유가 되므로,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924조, 940조).

만일,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위 청구를 요청하거나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2항), 피해아동의 변호사도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검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하거나 청구를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배상명령제도의 활용

(1) 부양에 필요한 금전, 직접적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아동보호사건이 아동보호재판으로 처리될 경우, 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아동보호재판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아동의 신청에 의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이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7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2) 배상명령

아동보호사건이 일반형사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피해아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 의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에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가 제외되며, 배상명령의 범위에서 부양료가 포함되지 않고, 위자료가 포함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소송촉진법 25조).

배상명령은 가집행 선고가 가능하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1조 제1항,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소송촉진법 제34조 제1항). 다만, 배상명령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부당한 합의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가정폭력처벌법 제61조 제2항, 아동학대처벌법 제44조, 소송촉진법 제34조 제2항).

6 Q&A

Q 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로 선정된 경우 변호사의 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A 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은 국선변호사의 선정이 취소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입니다. 즉, 아동학대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국선변호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보조인이 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위 절차가 중첩되거나 연속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든 절차가 종결된 때까지 국선변호사로서 피해아동을 위한 포괄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재판 진행 중 아동학대행위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아동 변호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피해아동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합의를 하는 때에는 미성년자가 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에 대한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와 피해아동 부모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재판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아동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학대행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자공탁을 신청하여 공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학대행위자가 피해자공탁을 위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알아낸 것이라면 당사자 동의 없는 인적사항 수집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Q 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2개월간의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에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 아동보호사건재판 진행 중인 현재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접근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접근금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A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의 임시조치는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이며, 그 수사단계에서는 해당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외에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사실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아동보호사건재판이 개시되고 심리 중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이는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로서 법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다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재판단계에서 행해진 해당 임시조치를 연장하는 외에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사실로 다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보호사건 심리 중의 임시조치는 청구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직권으로만 행하는 것으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의 신청은 판사에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이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법 제47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접근금지를 청구하도록 한다.

Q 아동보호사건 재판의 결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를 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가?

A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법 제33조) 다시 공소가 제기될 경우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사유로 인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제33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처분결정 이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판례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Q 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가 가능한가?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별도의 장에서 서술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기소여부, 보호처분 여부와 연계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무상 가정법원은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사실이 전제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재판에 대하여 서로간

의 진행상황을 참고하려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는 참고한다는 것일 뿐 학대행위자에 대한 내사종결, 불기소처분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보호처분과 내용적으로 중첩⁶²⁾되지 않는 특유의 피해아동보호명령⁶³⁾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학대행위자의 조치와 별개로 발하여질 것이 요청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분리되어 있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다른 보호자가 있어 따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실무상 친권자에 의한 경미한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제8호의 상담위탁 처분만 이루어지고, 피해아동을 별도로 원가정과 분리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Q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에 발생한 아동학대인데 피해아동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밝히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능한가?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전제로 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범죄의 성립요건과 시간적 한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아동학대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범하여 진 것이라면,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되는 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그 아동학대사실 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아동학대사실이 있었고 그 사실로 인하여 현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쳐 아동의 복리를 해하는 지경에 이르러 아동이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것 자체가 새로운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62)	보호처분 (법 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법 제47조)
격리·접근금지	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친권·후견인 권한행사 제한·정지	제1항 제3호	제1항 제7호·제8호

- 63)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피해아동보호명령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구자 등에게 가정위탁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실제사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 친부에 의한 강제추행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친부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됨. 그런데 이후 친부가 다시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여 피해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피해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친부와 격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및 피해아동의 시설보호를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받은 사례.

Q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곧 출소 예정인데, 따로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선고가 없었다.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출소한 이후 자신을 찾아와 보복을 하거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매우 두렵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나 발생할 경우 아동학대범죄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능한가?

A 아동학대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예방적 피해아동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피해아동이 현재에 느끼는 두려움 등이 아동복지법위반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정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 자체를 아동학대범죄로 구성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참고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 중 보호위탁, 연고자 위탁 등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행정처분)로서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의 명령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 위 보호조치를 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실제사례 : 삼남매에 대한 친부의 아동학대(신체, 정서학대, 방임, 죽은 시신을 보여주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 등)로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상황에서 피해아동들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친모 및 친척들이 끊임없이 시설보호 중인 피해아동들에 연락 및 면담을 시도하고 있음. 그 사이 삼남매 중 장남이 성년이 되어 보호자로서 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며, 친모와 친척들이 전하는 소식에 비추어 출소 후 친부가 동생들의 친권의 다시 행사할 것이 예견되는 바, 이에 친부에 대하여 출소 후 피해아동들에게 접근할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Q 피해아동을 보호할 친인척 등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친구 집을 전전하거나 친권자가 부재한 원가정에 홀로 방치되는 등 위험이 있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명령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피해아동이 시설의 입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⁶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하여 지는 법원의 명령이므로, 피해아동이 입소를 거부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9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본을 위의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집행지휘·집행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전에 충분히 피해아동과 소통하여 의사를 확인·설득하도록 하며, 자의 입소가 어려울 것이 예상된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 중에 미리 조사관이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지휘를 내려줄 것을 요청을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설득이 실패할 경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Q 피해아동에게 소아정신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치료위탁을 청구한 결과 「피해아동을 000병원에 치료위탁 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면 이로써 입원치료가 가능한가?

A 치료위탁의 내용으로는 통원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료위탁”의 문구만으로 당연히 입원치료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청구 시에 청구취지상으로 명확히 “입원치료”를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재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입원 필요성을 소명하여 “입원치료”가 명시된 결정서를 받도록 한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상 치료위탁기관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에 따라 이미 법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만을 의미하므로, 그 외의 치료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치료를 하고자

64)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 중에는 이처럼 피해아동이 스스로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할 여건이 되지 않는 보호자가 무리하게 아동을 계속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면, 친권자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9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아동 치료를 위하여 일정부분 부담하는 비용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⁶⁵⁾.

Q 수급자로 지정된 피해아동의 수급비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로서 동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제9호상의 친권자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통장을 개설하는 행위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그 결정서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시중은행에서는 해당 결정서가 거둬 사용될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결정서를 요구하므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과 미리 협의하여 구체적인 결정서의 문안을 만들어 청구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결정서 상에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할 시중은행명, 체결할 예금거래계약의 종류, 예금거래계약 체결일시” 등이 명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심판규칙」상의 집행지휘도 명확히 받도록 한다.

※ 청소년증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은행거래에 있어서 공적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은행에 따라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러한 청소년증으로서 신분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은행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청소년증은 미성년자 본인이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 참고 : http://www.mogef.go.kr/cs/yac/cs_yac_f005.do

65)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 제6항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Q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재학대의 우려가 있음에도, 시설 입소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피해아동이 친밀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친구의 부모도 피해아동이 원한다면 피해아동을 데리고 있겠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 친구의 부모가 법률상 권한 있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가?

A 피해아동의 보호·양육·교육 등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후견인 지정에 따르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제6호상의 연고자 등에의 가정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8조는 가정위탁의 수탁 연고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고자의 직업, 소득, 아동학대 등 전력, 가정환경과 피해아동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미리 연고자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듣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실무는 위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에 연고자를 출석시켜 판사의 면전에서 가정위탁 의사를 확인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서에만 연고자의 가정위탁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가정위탁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 일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하여 해당 사례의 친구 부모가 일반가정위탁의 요건을 확인받고 교육을 받은 후 해당 센터에서 법원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실제사례 : 친인척, 위와 같은 친구의 부모, 친구의 친언니, 학교 내 상담교사, 오랫동안 피해아동과 함께 일해 온 가게 사장님에게 가정위탁 명령이 내려 온 바 있음

제5장

아동학대 유관기관

》 제5장

아동학대 유관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아동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아동복지법 제45조). 비영리법인에 위탁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무수탁사인의 성격을 가지며, 이로써 국가배상책임을 지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7. 7. 20.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61개소이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59개소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

('17. 10. 25.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구분	합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관수	61	1	8	4	3	3	2	1	2	12	4	3	3	3	3	4	3	2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책제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관련 연구 및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 한다(아동복지법 제46조제1항).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는 개인정보를 파일화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아동학대사건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아동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과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즉시열람권한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1호) 단, 유치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②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행사 상실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 ③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및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 응급조치 수행(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④ 행위자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신청(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임시조치요청(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⑤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인 선정신청 지원 및 신뢰관계인 동석 등

- ⑥ 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아동보호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 개선,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의견 개선
- ⑦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위탁 수행
- ⑧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후견업무를 수행할 자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지정을 받아 임시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 제47조제3항)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길 19	02-558-1391
울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 돌질로 355번길 23	052-256-1391
경기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2번길 17(연무동 189-2)	031-8009-0080
광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운암동)	062-675-1391
부산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051-791-1360
대구	대구광역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 (산격동)	053-710-1391
강원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 3층	033-535-5391
경기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031-652-1391
부산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0-1 화명대림타운상가 4층 405, 406호	051-711-1391
경남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8 2층(부원동)	055-322-1391
경남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055-244-1391
충남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신경리 903)	041-635-1106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053-623-1391
경기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 동, 2층)	031-316-1391
경기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 호(구갈동)	031-275-6177
인천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 (간석동)	032-424-1391
서울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 광빌딩 5층	02-474-1391
전남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061-332-1391
경기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402호(월피동, 에스엘타운)	031-402-044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 형동)	064-712-1391~2
제주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064-732-1391~2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051-240-6300
부산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051-715-1391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052-245-9382
경남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 대동)	055-757-1391
전남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061-753-5125
전남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061-285-1391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062-385-1391
전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063-283-1391
전북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 동 185-3)	063-852-1391
전북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063-635-1391~3
대구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동인동3가)	053-422-1391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북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	054-745-1391
경북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	054-853-0237~8
경북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054-284-1391
경북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054-455-1391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	042-254-6790
충북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202번길 66-1(율량동)	043-216-1391
충북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043- 645-9078
충북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043-731-3686
충남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041-578-2655
충남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041-734-6640~1
강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033-244-1391
강원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33 2층(교통, 반트스포츠센터BD)	033-644-1391
강원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	033-766-1391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032-434-1391
인천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3 재현빌딩 4층	032-515-1391
경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	031-245-2448
경기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031-874-9100
경기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031-756-1391
경기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삼정프라자 7층	031-966-1391
경기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중3동 1058-4)	032-662-2580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031-227-1310
경기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 39 다남빌딩 204호	031-592-9818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02-2040-4242
서울	서울특별시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	02-2247-1391
서울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가양동)	02-3665-5183~5
서울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AGM 빌딩 4층(응암동)	02-3157-1391
서울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02-842-0094
서울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923-5440
서울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02-422-1391

2 학대피해아동쉼터

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아동복지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규정한다(동법 제53조의2). 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

(17. 9. 6.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구분	합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쉼터 수	40	0	3	2	0	1	2	1	8	3	5	1	3	5	2	2	2

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특성 및 기능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이 분리보호 조치한 학대피해 아동에 한하여 입소하는 특수 공동생활가정으로 민간(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만 입소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쉼터 소재지 시·군·구 아동 뿐만 아니라 타지역 아동도 입소 가능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달리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로, 학대피해아동은 쉼터에서 3-9개월 간 집중심리치료 및 생활지도를 받고 원가정복귀·가정위탁·일반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전원조치 된다. 다만,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속 입소가 가능하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①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②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및 생활 지원
- ③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④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3 해바라기센터(66)

가. 사업 목적 및 법적 근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학적·심리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 사회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5.1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66) “2017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참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4.12.12.〉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1. 통합지원센터에는 소장1명, 부소장1명, 전문상담사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센터에는 별도의 임상심리사(치료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소장의 경우 겸임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나. 설치·운영 현황⁶⁷⁾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총 37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능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형(8개), 위기지원형(16개), 통합형(13개)으로 구분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중앙의 기능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가 거점이면서 통합형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① 아동·청소년형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료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법률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지원

② 위기지원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③ 통합형

위기지원형과 아동·청소년형을 통합

67) 2017년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9~10쪽

지역	운영기관	명칭	기능
중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중앙
서울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해바라기센터	통합
서울	연세의료원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서울	삼육서울병원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통합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부산	부산대병원	부산해바라기센터	통합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인천	인천의료원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인천	인천성모병원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광주	조선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광주	전남대병원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대전	충남대병원	대전해바라기센터	통합
울산	울산병원	울산해바라기센터	통합
경기	의정부의료원	경기동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기	한도병원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통합/거점
경기	명지병원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기	분당차병원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강원	강원대병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강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지역	운영기관	명칭	기능
충북	건국대충주병원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충남	단국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전북	전북대병원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위기지원
전북	전북대병원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아동·청소년
전남	성가롤로병원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전남	목포중앙병원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북	안동의료원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북	포항성모병원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통합
경북	김천제일병원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경남	경상대병원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아동·청소년
경남	마산의료원	경남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제주	한라병원	제주해바라기센터	통합

다. 지원 대상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4 여성긴급전화 1366

가. 설치근거 및 운영현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피해자 긴급구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동법 제4조의6). 보호자가 아닌 가정구성원에 의한 아동학대나, 보호자 중 1인이 가정폭력피해자로서 학대피해아동을 동반하여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

2017. 7. 20. 기준으로 전국 17개 센터(서울, 경기 2개 센터)에 중앙 센터를 포함하여 총 1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센터 내에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피난처는 3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나. 아동학대관련 업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상담·구조·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여성이나 동반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긴급전화연계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 지역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조치 한다. 가정폭력피해자와 동반 입소한 아동에게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상담을 의뢰하며, 입소한 아동의 기본정보와 학대정도, 학대행위자 아동의 현재상황 기타 사항 등 초기상담으로 파악한 내용들과 지원 내용을 공유한다. 피해아동의 피해자 아닌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처에서 최대 7일간 일시보호가 가능하고, 피해자 긴급보호 필요시 사법경찰관과 직접 연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할 수 있다.

5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학대의 경우는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성폭력범죄에 특화된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가. 성폭력상담소

(1) 설치근거 및 현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담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0조).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17. 1. 1. 기준)는 장애인 상담소 수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상담소수	159 (23)	19 (4)	6 (1)	4	5 (2)	9 (1)	4 (2)	4 (2)	1	33 (3)	7	8 (1)	14 (2)	9 (1)	8 (1)	11 (2)	14 (1)	3 (1)

(2) 주요업무 (성폭력방지법 제11조)

- ①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연계
- ③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 ④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 ⑤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여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⑥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⑦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설치근거 및 현황

성폭력방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12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16. 6. 1. 기준(개소예정포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반보호시설	15	2	1	1	1	1		1		3		1		2	1				1
장애인보호시설	8		1			1	1			1		1	1		1				1
특별지원	4						1			1							1	1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																1	1	

(2) 주요업무 (성폭력방지법 제13조)

- ①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 ②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③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④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 ⑤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의 제공

6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 가정폭력상담소

(1) 설치근거 및 현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담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는 가정폭력관련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5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현황〉

(‘17. 1. 1. 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상담소 수	205	34	11	4	6	7	5	4	42	11	7	13	9	10	22	15	4	1

(2) 주요업무 (가정폭력방지법 제6조)

- ①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②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인도
- ③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④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 ⑤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⑥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 ⑦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시행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중이던 피해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넘는 경우 계속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연계할 수 있다. 여지가 있다.

(1) 설치근거 및 현황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7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현황〉

(‘17. 1. 1. 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호시설 수	67	12	3	3	1	4	1	1	12	5	3	4	4	4	2	6	2

(2) 주요업무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 ① 숙식 무료제공(단기보호시설(가족보호시설 포함) 보호기간 : 6개월 이내(3개월 범위 내에서 연 연장가능,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보호기간 : 2년 이내, 임시보호는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②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직업, 취업훈련 프로그램지원)
- ③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④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⑤ 가정폭력에 따른 동반아동의 취학지원 등

※ 가정폭력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가정폭력방지법 제4의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6·7항, 아동복지법 제29조 제5항도 같은 취지)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중·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 관계기관은 시설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학교에 제출)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입학 요청하여야 함.

7 Q&A

Q 아동이 아버지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경우, 피해아동은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어느 곳을 찾아가야 하는가?

A 아버지에 의한 강간피해는 성폭력범죄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되므로 해바라기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보호자(예를 들어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자신의 보호를 받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한 것은 아동학대범죄이기 때문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바목).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면, 해바라기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므로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는 모든 사례는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9호). 해바라기센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구성원 간에 일어난 아동학대범죄는 가정폭력범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Q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하여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에 위탁하였는데,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을 찾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는 등의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학대행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금지할 수 있는가?

A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은 그 범위가 일정부분 중복되므로, 일선 실무에서는 아동학대피해자임이 확인되는 이상 가정폭력피해자로서의 지위도 인정하여, 해당 법률상의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3조의2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만 주민등록표열람제한신청을 받아주도록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입소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만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표열람제한신청이 불가하다.

제6장

특수한 경우의 아동

》 제6장

특수한 경우의 아동

1 이주배경 아동

가.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 및 현황

(1)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

'이주배경 아동'은 아동의 국적,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이주를 한 경험으로 인해 범주화되는 아동 집단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⁶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가 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그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인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지위에 관한 선택의정서(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른 난민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을 포함한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았지만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아동과 그밖에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체류자격이 불안정한 아동 모두를 포함한다.

68)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제14쪽, 세이브더칠드런

(2) 국내 이주배경 아동의 현황

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3만 명의 외국 국적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과 무국적 아동 등을 포함하면 약 15만 명 이상의 비(非)한국 국적 이주배경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수의 이주배경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 국내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특히 아동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단속과 구금, 퇴거의 공포로 인하여 적절한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결과 이들 아동에 대한 보호는 더욱 사각지대에 있다.⁶⁹⁾

나.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어려움

(1) 일반적인 아동학대 관련 신고 및 처리

앞서 제1장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언급했듯, '아동'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처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서, 부모나 아동 당사자의 국적·인종·사회적 출신·기타 신분 등 전제조건 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은 현장조사를 거쳐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보호처분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 또는 지자체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위탁 또는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69)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2)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에 받지 못하는 지원

(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 불해당

그런데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절차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는 예외적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고, 그 외 「난민법」 제32조에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만이 수급권자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위기 가정인 경우에도 이주배경 아동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아동복지시설 입소의 어려움

더욱이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장기생활시설로서 아동양육시설(제52조 제1항 제1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인건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로서 아동의 생계와 교육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하는 공동생활가정(제52조 제1항 제4호, 제53조의2)은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 수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이주배경아동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이들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아동보호를 거부하곤 한다. 행정기관은 이주배경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즉,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과 아동의 가정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인권보호의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다.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1) 이주배경의 아동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과 협약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배경의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처리과정은 국민인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시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이주배경 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정부도 다음과 같이 이주배경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지침을 근거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절차와 더불어 관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확보 및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⁷⁰⁾

- ①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및 긴급생계지원 실시
- ②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2017년 시설보호아동 보호단가⁷¹⁾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보장시설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노력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주배경 아동 보호 의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지침에서도 이주배경 아동에게 준용할 수 있는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가능한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과 법원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이고 신속한 아동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아동을 유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하면 주소지 우선, 그러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센터가 관할센터가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말소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모두 가출 등으로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현재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가 관할하여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70) 2017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2권 제210쪽, 제212쪽

71) 2017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제1권 제162쪽

(4) 이주배경의 아동보호와 출입국관리법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하게 된 공무원이 아동의 체류자격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호의 취지를 고려하면 통보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과 공공·민간시설이 아동의 미등록지위로 인해 아동보호의 곤란과 통보 등을 문제 삼는다면, 해당 아동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4.3.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28>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라. Q&A

Q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현장단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이주배경의 아동을 지원하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단체가 있다.

단체명	상세내용	
아시아의 창	주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207
	전화번호	031-443-2876
	홈페이지	http://www.achang.or.kr/
이주와 인권연구소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시청센트빌 203호
	전화번호	051-851-6801
	홈페이지	http://www.mihu.re.kr/xe/
코시안의 집	주소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1-4 안산이주민센터 부설 코시안의 집
	전화번호	031-492-8785
	홈페이지	http://www.kosian.or.kr/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전화번호	02-749-6052
	홈페이지	http://www.inkwon.or.kr/introdu_inkwon.php

2 장애아동

가.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 받고, 장애수당 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제공 받는다. 그러나 등록절차를 모르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미등록 장애인 다수 존재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등록을 한 장애인은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눈다(장애인복지법 시

행령 제2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장애급수가 1급에 가까울수록 중증의 장애인이며, 장애별로 급수 범위가 다르다. 가령 지체·뇌병변·시각장애는 1~6급까지 있지만, 청각장애는 2~6급, 언어장애는 3~4급, 지적·자폐성, 정신장애는 1~3급 등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등급이 존재한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따라서 피해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관상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래 장애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 등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장애인 등록신청서와 ② 장애인의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이렇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은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한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6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장애등급제’는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장애인 등록시 장애 유형과 등급이 함께 정해진다.

(2) 장애인복지법상 15개의 장애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나. 장애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⁷²⁾ 등과 동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지원을 위하여 상담을 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여 상담을 하러 오고 현장에서 보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한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마중을 나가거나, 이동경로 안내, 이동 공간 확보 등 필요한 점을 잘 준비한다. 상담을 하는 공간이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한다.

7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세면도움, 화장실 이용, 옷 입기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외출지원 등의 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 개인 신변에 가장 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이용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음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담을 위한 보조도구(그림카드, 오엑스카드, 숫자카드 등)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정식 도구를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O, X 등을 크게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고, 숫자의 경우 주변의 소품(달력, 지갑 안의 지폐와 동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에서 사법기관은 장애인에 대해 사법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조력의 내용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장애로 인해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 신뢰관계자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동석 등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등의 쉬운 표현을 사용하면 좋다.

장애아동의 경우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리에 아동심리센터 소장 등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경우가 있다. 진술조력인과 사전에 최소한 10분 이상 대화를 나눠서 진술조력인이 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내용을 이해하는데 수월하다.

특정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장애아동이 있으므로 약 복용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장애로 인해 발달이 늦거나 체격이 작아 어려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말은 절대 삼가고, 실제 연령에 맞게 대우한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조기구 등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위치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애인의 보조기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신체 일부와 같으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분리해서는 안된다.

장애인 시설 내·친족 간 범행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한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하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대질 조사를 한다고 할 때에도 가급적 지양하도록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조사 시 장애인을 직접 응시하되, 신체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부분에 대한 시선을 자제하고, 진술을 경청하고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신뢰관계자나

의사소통 중개자가 참여한 경우 질문 시 시선을 장애인이 아닌 동석자에게 두지 않도록 유의한다.

장애인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느끼므로 상담이 길어지거나 조사가 길어지면 휴식권 등을 보장받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가령 상담을 하기 전이라도 먼저 휴식이 필요할 경우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먼저 말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부러지는 빨대를 미리 비치해놓으면 편리하게 음료를 음용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정적 시각이나 말투는 자제하고, 장애인의 호칭과 관련하여 비하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전화연락이나 확대문서로 발송하면 좋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E-mail 등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 중 점자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 10%도 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면 되고 무조건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를 제공해야 하는 편견을 지양한다.

이하 다음 목차에서 각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다. 각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방법

(1)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안내자와 동행을 하였는지,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왔는지, 안내견을 동반하여 왔는지를 확인한 후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자신의 소개를 한 후 악수를 청한다. 그리고 안내자와 동행하였거나 안내견을 동반하였으면 일행의 앞에서 나아가며 장소를 안내한다. 흰지팡이를 사용하여 왔다면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필요하다면 흰지팡이를 들고 있다면 흰지팡이의 반대편

에서 자신의 팔꿈치를 가볍게 잡게 하고 반걸음 앞에서 안내한다.

시각장애인은 공간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길을 안내할 때는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앞으로 5m 가서 왼쪽으로 3m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의자를 안내할 때에는 의자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자의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을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잠시 비울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얼마 후 돌아올 것이라고 말을 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저시력을 가진 장애인이 큰 글씨로 된 신청서식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요청에 응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서를 읽거나 작성할 경우 대필자 또는 대독자를 배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읽기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통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문서작성, 인터넷 검색, SNS, 쇼핑 등 다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사무실에 비치된 민원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좋다.

(2)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언어의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므로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문법식 수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농식 수어만 구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식 수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이 필요하고, 농식 수어통역인에게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농식 수어통역인과 문법식 수어통역인의 이중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해당 청각장애인이 어떤 방식의 의사소통을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지 충분히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은 주로 수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거나, 간단한 메모 또는 문자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은 입모양을 보고 대화하거나, 메모 또는 문자를 통해 의사를 주고받는다.

청각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첫째, 간단한 수어를 배워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대화를 나눌 때 입모양(발음)을 정확하게 하여 조금 천천히 말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긴 문장을 사용하여 이야기 하는 것보다 단어 위주로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간단한 단어위주의 문자 또는 메모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주소, 열차시간, 의약품명, 숫자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다. 넷째, 손짓과 몸짓으로 최대한 단어를 표현하여 소통한다.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기기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제하고, 적당한 목소리로 천천히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좋다.

(3)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은 이동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휠체어 또는 클러치와 같은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이동한다. 자세 교정을 위해 보조기를 착용한 사람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은 가능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움을 주기 전에 반드시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과 대화할 때는 첫째, 눈높이에서 대화하기 위해 자세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좋다. 둘째, 외부에서 많은 시간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체장애인이 복도나 길에서 이동할 때에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어야 한다. 넷째, 클러치를 사용하거나, 서 있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도와줄 때 주의사항〉

첫째,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가기를 원하는 곳을 물어본 후 밀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는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으므로 지형에 유의하여 이동하고, 패인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출입문과 승강기에서는 휠체어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버튼을 눌러 주거나 문을 잡아주고, 문틈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승강기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먼저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셋째, 내리막길 또는 오르막길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휠체어를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멈추었을 때는 반드시 경사로와 직각이 되도록 하고, 브레이크 장치를 잠금으로 고정하며, 휠체어를 잡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심한 경사로를 오를 때에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넷째, 휠체어가 부득이 하게 계단 또는 턱을 오를 때는 앞바퀴를 들어 올린 후 앞으로 오르는 것이 좋고,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후 어느쪽이든 앞바퀴가 들린 상태에서 내려오면 된다. 또한 심한 경사로를 내려올 때에도 뒤로 내려오는 것이 안전하다.

다섯째, 지체장애인이 넘어졌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4) 자폐성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을 보이며, 일상생활 적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한다.

자폐성장애와 조현병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조현병의 출현 시기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에 출현 하지만 자폐성장애의 경우는 3세 이전에 주로 출현한다. 또한,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망각과 환각이 주요 증상이지만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제한적인 관심과 반복적인 행동이 주요 증상이다. 자폐성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첫째, 최대한 시선을 마주친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시도한다. 둘째, 쉽고 간단한 단어를 이용한다. 셋째,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자폐성장애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 하거나 이상한 몸짓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말과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 본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호자에게 바로 알려서 도움을 받도록 한다. 자폐성장애인에게 올바른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아주 훌륭합니다.”와 같은 칭찬과 “최고입니다.”를 표현하는 몸짓으로 긍정적 반응을 주는 것이 좋다.

라. 장애인 수사 및 재판과정 절차 지원제도

(1) 법무부 진술조력인 활용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증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나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을 하는 경우, 법률조력 이외에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면 진술조력인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39)에 문의하면 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관련자 활용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등을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도 이러한 장애인관련자가 장애인인 피해자와 동석을 요구하는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관련자에 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의 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장애인관련자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재판부에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제출

법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불문하고, 누구라도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법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사법지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화통역, 문자통역, 보청기, 확대경, 문서를 변환하여 읽을 수 있는 파일, 이동을 위한 휠체어 기타 이동을 위한 조치, 이동과 의사소통 등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인력, 휴식시간의 보장 등 장애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의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혹시 장애인 등록증이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사본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입양

가. 입양의 종류

입양에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는 개인 간 입양인 민법상 입양과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이하 ‘요보호아동’이라 한다)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기관 입양으로 구분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민법상 입양에는 입양의 효력에 따라 일반양자입양과 친양자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내국인 간 입양하는 것을 제외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을 국제입양이라고 한다.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모든 국제입양에 적용되는 데 반하여 현행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의 외국으로의 입양과 일반아동의 국내로의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과 요보호아동의 외국으로의 입양’만을 규율한다).⁷³⁾

73) 석광현,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위한 2016년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31권 제1호, 제119쪽

〈표 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제도 개관 - 입양제도 개요- 입양의 종류’

구분	일반양자입양 (민법)	친양자입양 (민법)	기관입양 (입양특례법)	국제입양
근거	민법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	민법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 국제사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나. 입양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6. 5. 29. 개정되어(법률 제14172호, 2016. 11. 30. 시행)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5호). 입양기관 종사자는 법원 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심리 중인 법원에도 지체 없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2017 입양실무매뉴얼, 보건복지부·중앙입양원, 33쪽).

다. 입양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대응 법적 조치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양부모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우선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사선으로 선임 또는 국선으로 선정된 피해자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면서 재판부에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촉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52조).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인 양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 내지 정지하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내지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변호사는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내지 임시보호명령)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을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수행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3항, 제47조 제4항, 제23조).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양자와 검사 등은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입양특례법 제17조, 민법 제905조·제906조).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의 파양 청구를 촉구할 수 있다. 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되었고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친생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 제2항에 따라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파양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친생부모가 친권

자로 지정받기 전까지 피해아동을 위한 법정대리인이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친생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친생부모 등을 선임해 달라는 임무대행자선임심판도 청구해야 할 것이다.

4 출생신고

가. 출생신고 될 권리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신고(등록)될 권리가 있다. 법원은 “출생신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교육, 보건의료, 사회보장 등 공적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관심과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사회적 의미의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라고 판시하여,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임을 분명히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6538 판결).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발효일 1990. 7. 10. (조약 제1007호))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발효일 1991. 12. 20. (조약 제1072호))은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설치된 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대한민국이 협약 제7조에 합치되도록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최종 권고했다(CRC/C/KOR/CO/3-4).

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모)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6조).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만약 모가 친부가 아닌 사람과 법

를혼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고 친부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뒤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항).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출생신고를 요청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한 출생신고는 출생신고를 할 때 기재되어야 할 친생부모의 구체적 정보가 있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 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46조(신고 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15.5.18.>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나. 출생신고 될 권리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면 유기 내지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공적인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다. 아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건강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 받게 되는 것이다. 공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동은 불법적인 입양, 아동매매, 아동학대범죄 등에 누구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다. Q&A

Q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아동학대로 인정한 판례가 있는가?

A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16. 6. 9. 피해아동을 출산하고도 유기한 채 가출하고 피해아동이 태어난 지 약 2년 8개월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을 방임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단6538 판결).

Q 국민이 아닌 이주배경의 아동은 어떻게 출생신고할 수 있는가?

A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오로지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에 관한 출생신고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는 출생신고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시·읍·면의 장이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이 때 출생신고 신고인은 수리증명서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리증명서는 출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지 아동의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공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요구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출생신고는 아동권리의 가장 기본적 권리로서, 모든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행사를 위한 출발점이다. 부모의 본국법에 따른 출생신고 역시 결코 용이하지는 않으나, 대사관을 통해 부 또는 모의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권한다.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 발행일** 2017년 12월
- 발행인** 회장 이 찬 희
- 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
06595,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
(서초동, 변호사회관)
- 전 화** 02) 6200-6200
- 홈페이지** <https://www.seoulbar.or.kr>
-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 비매품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서울지방법변호사회
Seoul Bar Association

